【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고 제2026-5호】

2026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 공고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11. 18.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채용 예정 인원 및 근무지(총 1명)

채용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기간제 근로자 (운전원)	1명 (육아휴직 대체)	계약체결일 ~ `27. 3. 3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근무기간은 원 근로자의 휴직 연장여부에 따라 대체인력의 근무성적 및 근로의사 등을 고려하여 연장될 수 있음

○ 담당예정 직무

- 공용차량(대형버스 포함) 운전 및 차량 유지·관리
-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및 호송업무 지원
-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의 호송업무 지원
- 사무보조 업무 및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2. 근무 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님)

○ 모집분야 및 인원 : 운전원 1명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 **원 근로자의 휴직기간까지 근무**, '원 근로자 휴직 연장 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 연장 여부 결정

○ 급여기준(2026년 기준)

- 월 고정급 2,599,510원(세전)

※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는 소속기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

○ 근무장소(예정)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52)

○ 근무시간 : **평일 주간근무(월~금, 09:00~18:00)**

※ 중식시간이 포함될 경우 근무시간에서 제외

※ 근무형태 및 근로 시간은 기관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

3. 채용 자격 요건

가. 응시 자격 요건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에 소속되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실제 1년(주 40시간 근무 기준) 이상(공고일 기준)인 자**

*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차량

※ 경력증명서(원서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상에 대형 승합차량 운전

경력이 확인 가능해야 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경력 인정(경력사항 제출 시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화물차량 운전 경력은 미인정)

※ 군 복무기간 중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에 인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군운전경력확인서 제출)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현재 유효하여야 함

※ 면허정지 또는 취소(예정)인 자는 응시불가하며, 국내 자격증에 한함

○ <u>거주지에서 근무지(충북 청주시 흥덕구)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관사 미제공)</u>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각호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한사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다. 우대 요건 및 가점(서류전형에만 적용)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구분	우대사항
기간제 근로자 (운전원)	○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 등에서 운전경력으로, (경력의 합이) 1년 이상의 운전경력부터 인정하며 최대 3년까지 인정(연차별 차등 배점)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발행기관의 직인이 찍힌 경력사항에 대해서만 인정 * 3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응시자에 한해 경력인정(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력은 불인정) * 2개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일 단위까지 합산하여 인정하되, 일 단위는 15일 이상인 경우만 1월로 인정(합산 1년 이상 경력사항만 인정) ○ 외국어 능력 우수자 * TOEIC 700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150점 이상 * 공고일 기준(2026. 11. 18.)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기타 언어 불인정, 복수의 검정점수를 제출하였을 경우 하나의 점수만 인정(중복산정 불가) ○ 태권도·유도·검도 단증 보유자 * 최소 2단 이상,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에 한함, * 국기원·대한유도회·대한검도회 발급 단증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취득분까지 인정, 기타 무도 불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구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공고일 기준 이전 취득 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 (운전원)

▪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 **70점(차등 적용)**

▪ 운전분야 근무경력 - **10점(차등 적용)**

평가등급	3년 이상	2년 이상~3년미만	1년 초과~2년 미만
점수	10	7	4

- 2개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일 단위까지 합산하여 인정하되, 일 단위는 15일 이상인 경우만 1월로 인정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 **10점(차등 적용)**

평가등급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점수	10	7	4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구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어학자격증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 - **5점(차등 적용)**

평가등급	언어자격증 2개 이상 (영어필수)	영어 또는 기타 언어 자격증 1개
점수	5	3

- 2가지 이상 어학자격증 합산 (영어 필수 /최대 상한점 5점)
- 인정기준 : 영어 TOEIC 700점이상 등, 중국어 신 HSK 5급 150점이상으로 다른 언어도 이에 준해서 인정

▪ 무도자격증 - **5점(차등 적용)**

평가등급	4단 이상	3단	2단
점수	5	3	2

- 태권도·유도·검도 단증 보유자 (최소2단이상)

▪ 사회형평 대상자 총점에서 가산점 3점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 하나만 인정)

○ **(가점사항)**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4. 채용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 응시자격,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심사기준 적격여부에 따라 합격을 결정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5배수 이하의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 대해 평가

○ 응시자 1명에 대해 개별면접 실시

〈 면접시험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

라. 예비 합격자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결정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기간	'26. 11. 18.(수) ~ 11. 27.(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사이트 게시
원서접수 기간	**'26. 11. 25.(수) 09:00 ~ 11. 27.(금) 18:00**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26. 12. 1.(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및 면접시험 공고	`26. 12. 3.(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개별통보
면접전형	**'26. 12. 8.(화) 14:0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2층 국적면접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52)
최종합격자 발표일	'26. 12. 10.(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개별통보
채용 예정일	'26. 12. 28.(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 접수처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행정동 3층 운영지원팀 사무실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중 택일**

*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52,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운영지원팀 채용담당자 앞(겉지에 '응시원서 재중(운전원)' 표기)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한 접수로 인정하며,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아니하며, 문자로 접수번호 회신

※ 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함

○ 채용예정인원 대비 응시자가 5배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 시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①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붙임 1】

② 응시원서 1부【붙임 2】

③ 이력서 1부【붙임 3】

④ 자기소개서 1부【붙임 4】

⑤ 주민등록부등본(모두) 및 초본(남성만) 각 1부

※ 단, 주민등록부초본은 남성에 한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번호 후단 미포함하여 발급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5】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동의여부를 체크하고 서명 후 제출

⑦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 6】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7】

⑨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대하고, 발급기관(회사) 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별도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 8】 작성 제출), 담당업무,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⑫ 대형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⑬ (우대) 해당자에 한함, 면접일에 원본 제시

- 공인 어학 성적증명서 사본 1부(공고일 기준 유효한 어학성적표 등)
- 무도 단증 사본 1부

※ 태권도, 유도, 검도에 한하여 인정하며 품증은 단증으로 변경 시 인정, 복수의 자격증을 제출하였을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단증만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자체수리기능사

⑭ (가산) 사회형평 가점 대상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① 기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발행) 1부

⑥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공고문 - 붙임 9】

⑦ 공정채용확인서 1부【공고문 - 붙임 10】

⑧ 반명함판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⑨ 통장 사본 1매(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

7. 참고사항

○ 피채용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붙임11]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임용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의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영문 제외).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의 중요한 사항이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운영지원팀(채용담당자 : 김선화, ☎ 043-230-9032)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 .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운전원)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필수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붙임 1】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 1부【붙임 2】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붙임 3】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붙임 4】	□ 제출 □ 미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남성은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초본 추가 1부** 발급) **※ 주민등록번호 후단 미포함**	□ 제출 □ 미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5】	□ 제출 □ 미제출
	⑦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붙임 6】	□ 제출 □ 미제출
	⑧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붙임 7】	□ 제출 □ 미제출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8】	□ 제출 □ 미제출
	⑩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1부씩 필수 제출 ※ 근무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붙임 9】작성 제출	□ 제출 □ 미제출
	⑪ 대형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 제출 □ 미제출
해당자	①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② 무도 단증 사본 1부(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만 인정)	□ 제출 □ 미제출
	③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④ 사회형평가점 증명서류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 □에 서류 제출 여부를 √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성명 : (서명)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2】

응 시 원 서

<table>
<tr><td colspan="5">1. 공통사항</td></tr>
<tr><td>지원분야</td><td colspan="2"></td><td>접수번호</td><td>< 미기재 ></td></tr>
<tr><td>성명</td><td colspan="4">(한글)</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 colspan="2">(본인휴대폰)</td><td rowspan="2">전자
우편</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비상연락처)</td></tr>
<tr><td>생일</td><td colspan="4"><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생년은 미기재</td></tr>
<tr><td>주소</td><td colspan="4"><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td></tr>
<tr><td>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td><td colspan="4">☐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채용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60세(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 미만인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신체 건강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각 호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에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회사(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에 소속되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실제 1년이상인 자</td></tr>
<tr><td>우대 사항
여부</td><td colspan="4">☐ 1년 초과 관련 근무 경력, ☐ 어학 자격증 소지, ☐ 태권도, 유도, 검도 단증 소지,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td></tr>
<tr><td>가점 사항
여부</td><td colspan="4">☐ 장애인, ☐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td></tr>
<tr><td colspan="5">2. 우대사항(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필요 없을 시 삭제</td></tr>
<tr><td rowspan="2">경력</td><td>근무지</td><td colspan="2">근무기간</td><td>담당업무</td></tr>
<tr><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어학자격증</td><td>자격증명</td><td colspan="2">자격증 취득(예정)일</td><td>자격 검정기관</td></tr>
<tr><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무도자격증</td><td>자격증명</td><td colspan="2">자격증 취득(예정)일</td><td>자격 검정기관</td></tr>
<tr><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직무 관련
자격증</td><td>자격증명</td><td colspan="2">자격증 취득(예정)일</td><td>자격 검정기관</td></tr>
<tr><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5">※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td></tr>
</table>

【붙임 3】

이 력 서

1. 인적사항			
성 명		응시분야	운전원
생월생일	※ 생년기제 불요 월 일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해당사항 없음		
주 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추가항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보훈대상(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2. 경력사항

근무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		
	~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서명)

※ 경력·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월생일	응시분야
		운전원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배우자 직업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서명은 자필로 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내용 중에 **출신학교명과 출생지**는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고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작업 프로그램 사용(글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 전형 진행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 및 이용목적	**근로자 채용 심사, 서류·면접 전형 진행, 자격요건 및 근로계약 체결**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력·경력사항, 자격증 보유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 절차 종료 후 180일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보존기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필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 및 이용목적	**법정 우대사항 확인(장애·보훈 등) 및 면접 전형 관련 편의(차량 주차 등록 등 제공)**
수집 항목	**장애·보훈 대상 여부 및 증빙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 절차 종료시 까지**
※ 귀하는 선택 항목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본 채용 심사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선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안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법령고지)	
처리 목적 및 근거	**채용 절차 진행, 본인 확인, 범죄경력조회 사전안내**
관련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일 ~ 근로기간종료시 까지**
※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기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생년월일	.　.　.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운전원)

본인은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실시하는 자격,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8】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붙임 9】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 근로자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 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10】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 작성자 인적사항

- 생년월일 :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 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 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1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